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44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김한규 · 박상혁 · 한병도
진선미 · 이재정 · 이원택
박정현 · 장철민 · 김태년
박홍배 · 문대림 · 양부남
이용우 · 최혁진 · 이주희
의원(15인)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결정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고, 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임.

한편 2024년 9월 20일 「민법」 제1004조의2 신설로 피상속인의 직

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음.

이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하여 유류분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속결격 및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003조).

나.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1008조).

라. 기여분이 정하여진 때에는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고, 기여분이 정하여지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유류분 산정에 있어 기여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3조).

마.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정함(안 제1115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제2항 중 “死亡 또는 缺格된 者の 配偶者”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로 한다.

법률 제20432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100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를 “상속인이 될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부양의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를 “공동상속인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부양의무”로 한다.

제100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1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008조의2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여분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한 다음, 기여분권리자에 대하여는 다시 그의 기여분을 가산한다.

③ 제1008조의2에 의하여 기여분이 정하여지지 않은 때에도 법원은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분을 정할 수 있다.

제1115조의 제목 및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8조, 제1113조 및 제111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01조 및 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같다.

제3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

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1001條(代襲相續) 前條第1項第1號와 第3號의 規定에 依하여 相續人이 될 直系卑屬 또는 兄弟姊妹가 相續開始前에 死亡하거나 缺格者가 된 境遇에 그 直系卑屬이 있는 때에는 그 直系卑屬이 死亡하거나 缺格된 者의 順位에 갈음하여 相續人이 된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第1003條(配偶者의 相續順位) ① (생략) ② 第1001條의 境遇에 相續開始前에 死亡 또는 缺格된 者의 配偶者는 同條의 規定에 依한 相續人과 同順位로 共同相續人이 되고 그 相續人이 없는 때에는 單獨相續人이 된다.	第1003條(配偶者의 相續順位) ① (현행과 같음) ② ----- -----<u>사망한 사람의 배우자</u> ----- ----- ----- -----.
법률 제20432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u>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u>	법률 제20432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u>상속인이 될 사람이</u>-----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
 대한 범죄 행위(제1004조의 경
 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illegible]

1. ----- 부양의무

2. 직계혈족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동상속인은

1. 피상속인에 대한 <u>부양의무</u> (<u>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u> <u>한정한다</u>)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1. -----<u>부양의무</u> ----- ----- -----
2. (생 략) ④ ~ ⑧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第1008條(特別受益者の 相續分) 共同相續人중에 被相續人으로 부터 財産의 贈與 또는 遺贈을 받은 者가 있는 境遇에 그 受 贈財産이 自己의 相續分에 達 하지 못한 때에는 그 不足한 部分의 限度에서 相續分이 있 다. <신 설>	第1008條(特別受益者の 相續分) 共同相續人중에 被相續人으로 부터 財産의 贈與 또는 遺贈을 받은 者가 있는 境遇에 그 受 贈財産이 自己의 相續分에 達 하지 못한 때에는 그 不足한 部分의 限度에서 相續分이 있 다. 다만, <u>증여나 유증이 상당</u> <u>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u> <u>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u> <u>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u> <u>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u> <u>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u> <u>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u> <u>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u>
第1010條(代襲相續分) ① 第1001 條의 規定에 依하여 死亡 또는 缺格된 者에 갈음하여 相續人 이 된 者의 相續分은 死亡 또 는 缺格된 者의 相續分에 依한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 조의 규정에 依하여 사망하거 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 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u>다.</u> ② <u>前項의 境遇에 死亡 또는 缺格된 者の 直系卑屬이 數人인 때에는 그 相續分은 死亡 또는 缺格된 者の 相續分の 限度에서 第1009條의 規定에 依하여 이를 定한다. 第1003條第2項의 境遇에도 또한 같다.</u> 第1113條(遺留分の 算定) ① (생략) <u><신 설></u> <u><신 설></u> ② (생략)	<u>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u> ② <u>전항의 경우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u> 第1113條(遺留分の 算定)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008조의2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여분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한 다음, 기여분권리자에 대하여는 다시 그의 기여분을 가산한다.</u> ③ <u>제1008조의2에 의하여 기여분이 정하여지지 않은 때에도 법원은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분을 정할 수 있다.</u>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	---

第1115條(遺留分の 保全) ① 遺留
分權利者が 被相續人の 第1114
條에 規定된 贈與 및 遺贈으로
인하여 그 遺留分に 不足이 생
긴 때에는 不足한 限度에서 그
財産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
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
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
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가액의 지급
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
한다.

② (현행과 같음)